파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33호

2026년 파주시 파주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재공고)

2026년 파주시 파주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파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근거

-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채용예정 직위 및 개요

임용직위	임용직급	임용인원	주요업무내용
파 주 보건소장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1명	<파주보건소 업무 총괄>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약국 등 지도 및 응급의료, 보건실험 또는 검사 등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보건교육 등 ○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 보건의료 취약계층 방문 등 보건의료사업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그밖에 보건의료 향상, 증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3 임용 신분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근무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 유지

※ 임용신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4 응시 자격요건

❍ 기본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자격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자격요건
학력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분	자격요건
민간 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5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6 접수방법 및 일정

□ 접수방법

❍ 접수장소 : 파주시청 본관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본관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수수료 : 5급(가급) 이상 1만원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 접수(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불가
- 파주시청 민원여권과(민원동 1층)에서 **응시수수료 납입 후** 접수처에 제출
 (원서접수 당일 응시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우편접수】[우편확인을 위해 발송 후 인사팀(031-940-4126) 확인전화 필수]

- 가급적 빠른등기로 송부 권장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통보**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 택배, 퀵서비스 불가**
- 응시수수료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불가**
- 우편접수 시 구비 서류 미비 등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로, 이후 도착 서류는 접수 불가
- 우편봉투 겉면 **‘2026년 파주시 파주보건소장(개방형직위)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6. 11. 9.(월) ~ 11. 13.(금) <5일간>	’26. 11. 20.(금) 전·후	’26. 12. 예정	미정	’26. 12.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여부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파주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함
-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관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개별 면접 실시를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건 및 인격(대인관계) 검증
- 심사대상 능력요건 :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변화관리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8 제출서류 ※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제출서류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류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오 없이 기재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추가 서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요구기간 내 제출분만 인정)**
- 외국어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하여 제출
- 증명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자격증의 경우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 지참**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1만원 ▸ 파주시 수입증지 첨부(파주시청 민원봉사과)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력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동의서 3부 [별지 제5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⑦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⑧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경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①근무부서, ②근무기간, ③담당업무, ④주 단위 근무시간(혹은 근무형태), ⑤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⑥발행기관 직인** 필수
 - ※ **하나라도 회사 별도 양식에 없을 시 업무분장표 등 증빙서류 혹은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 ※ 발급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양식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기관 도과 시 경력 불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제출**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정규직 또는 상근직의 경우 또한 **주당 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상근 또는 전일근무)** 명시하여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 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시 관련 분야임을 서류에 명시하여 제출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⑩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 제출한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⑪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⑫ 관련분야 연구실적 등(해당자에 한함)

9 보수수준

❍ 연봉

- 경력직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합격자의 경력·능력·면접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단위 : 천원)

임용예정 직위	임용직급	연봉	
		상한액	하한액
파주보건소장	개방형 4호		70,490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 관련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또는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력·경력·자격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본인이 요청 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 가능합니다.(합격자는 반환하지 않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31-940-4126)으로 문의 및 홈페이지(www.paju.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